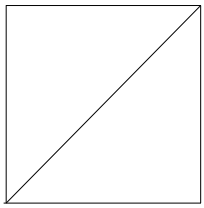

의안번호	제 2014 - 15 호
보 고 연 월 일	2014. 6. 9. (제56차 정기회의)

보고안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목 차

Ⅰ. 제80차 전체 회의 ····· 1

1. 일시・장소 ····· 1

2. 참석자 ····· 1

3. 주요 안건 ····· 1

4. 장물・손괴 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 1

5. 게임물 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 10

Ⅱ. 제81차 전체 회의 ····· 11

1. 일시・장소 ····· 11

2. 참석자 ····· 11

3. 주요 안건 ····· 11

4. 권리행사방해 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 11

5. 신용・업무・경매 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 16

6. 게임물 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 22

<별첨자료>

강동혁, “장물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

강동혁, “손괴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

황병헌, “게임관련법위반죄 양형기준 검토”

황병헌,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

강동혁, “ 신용·업무·경매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

황병헌, “게임관련법위반죄 양형기준 검토 II”

김현아, 오기찬 “게임관련법위반죄 양형기준 검토”

I. 제80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4. 5. 12.(월) 16:00 ~ 18: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14명)

○ 수석전문위원, 강동혁, 강수진, 김현아, 김혜정, 노수환, 범현, 오기찬, 이수정, 이진국, 최준혁, 최진녕, 황병헌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장물·손괴, 게임물 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4. 장물·손괴 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가. 범죄군 구분

(1) 장물범죄와 손괴범죄를 별도의 범죄군으로 구분

○ 양형기준 설정범죄군 선정 의결 시(제50차 양형위원회 회의)에는 장물범죄와 손괴범죄를 하나의 범죄군으로 묶어 '장물·손괴범죄'로 명명

○ 그러나 장물범죄와 손괴범죄는 형법상 재산범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남아 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는 점 외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음

○ 이를 하나의 범죄군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범죄의 보호법익과 속성,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 등이 상이한 범죄들을

하나의 양형기준 범주에 포함시킬 경우 전체 양형기준 체계에도 맞지 않는 문제 발생

○ '장물·손괴범죄'를 **'장물범죄', '손괴범죄'로 범죄군을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각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설정해 나가기로 **의견 일치**

나.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논의결과

(1) 양형기준 설정범위

(가) 형법상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 및 알선죄

○ 장물범죄의 기본 구성요건들인 점, 국민적 관심, 범죄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의견 일치**

(나)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범죄

○ ① 법정형이 '1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여 징역형 형량분포 폭이 좁고 형량구간 설정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점[1], ② 주로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사건 등에서 문제되는 범죄유형으로 국민적 관심이 특별히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중과실 장물죄의 경우 적용되는 실무례도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설정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의견 일치**

(다) 상습장물죄(형법 제363조, 특가법 제5조의4 제4항), 누범 장물죄(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 동종전력, 행위습성 등에 따라 가중된 구성요건인 점, 유사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의견 일치**

- 형법상 상습장물죄와 특가법상 상습장물죄는 구성요건은 동일하나 법정형에 큰 차이가 있음(형법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특가법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그러나 실무상 형법상의 상습

1) 지금까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징역형의 법정형이 가장 낮은 범죄는 폭행, 배임증재 등으로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며, 지난 성매매 범죄 양형기준 설정 당시에도 징역형 법정형이 1년 이하인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에 대해 같은 이유로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음

장물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형법 규정을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할 수 없음 ⇨ 형법상 상습장물죄도 양형기준 설정대상에 포함시켜 특가법상의 상습장물죄와 하나의 유형으로 포섭하고, 형법상 상습장물죄와 특가법상 상습장물죄의 법정형 및 실무례를 포괄할 수 있도록 형량범위를 설정하기로 의견일치

(라)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장물죄

○ 문화적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특별한 보호필요성, 절도범죄 양형기준(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절취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장물죄를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일치**

(2) 유형분류

(가) 대유형분류

○ **일반장물**과 **상습·누범장물**로 나누어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의견일치**

(나) '일반장물' 유형 내 소유형분류

○ 일반장물 대유형 내에서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로 소유형을 구분하기로 **의견일치**

- 절도죄의 경우처럼 피해재산의 가치 내지 피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로 분류
-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장물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2년 이상 징역) ⇨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범죄와의 법정형의 차이를 유형분류를 통해 반영할 필요

○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의 소유형 세분 여부 (**아래 3안으로 의견일치**)

- **1안 : '가치가 높은 재산',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으로 유형 구분**

■ 절도죄 양형기준에서는 '가치가 높은 재산',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으로 소유형을 구분하여 형량범위에 차등을 둠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의 절도

– 금융기관(특경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현금, 유가증권 또는 귀금속 등에 대한 절도
– 단기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품귀현상이 발생한 물건에 대한 절도
–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의 절도**
– 임산물 절도 중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절도
– 송유관(송유관 안전관리법이 규정하는 송유관) 내 석유 절도
– 임산물 절도 중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절도
–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흥망 또는 해당 분야의 판도가 바뀔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

■ 절도죄 양형기준과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 동일하게 소유형 분류

※만약 1안을 채택할 경우 대유형을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상습·누범장물'로 분류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 **2안 :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하나의 유형으로만 구분**

■ 절도죄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를 절취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 그 외의 지정문화재 등을 절취한 경우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 그와 같은 차이를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과 '가치가 높은 재산'으로 구분하여 반영하였음

■ 그러나 문화재보호법 상의 장물죄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외의 지정문화재에 대한 대상의 구분 없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92조 제3항) ⇨ 절도죄 양형기준처럼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과 '가치가 높은 재산'으로 소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의 1, 2유형의 정의규정을 적절히 반영하여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

- **3안 :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을 절도범죄의 '가치가 높은 재산'에 해당하는 범죄들로 하나의 유형으로 구성하되, 절도범죄의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해당하는 유형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의견일치**

■ 양형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법의 정도를 양형기준에 적절히 반영 가능

(다) 유형분류안 예시

01 일반장물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2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02 상습.누범장물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누범장물			

다. 손괴범죄 양형기준안 논의결과

(1) 양형기준 설정범위

(가) 형법상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공익건조물파괴, 특수공익건조물파괴, 폭처법위반죄(공동재물손괴, 상습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누범재물손괴, 상습·특수재물손괴, 누범·특수재물손괴)

○ 손괴범죄의 기본 구성요건 및 가중요건으로,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의견 일치**

(나) 미수범죄(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공익건조물파괴죄, 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 지금까지 살인범죄 이외에 미수범의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점, 실제로 미수로 처벌되는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설정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의견 일치**

(다) 형법상 경계침범죄

○ 양형기준 설정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의견 일치**

- 보호법익이 '토지경계의 명확성'으로 소유권의 이용가치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물손괴죄와 상이
- 실무례가 거의 없으며, 국민적 관심도 낮음

(라) 형법상 중손괴죄,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죄,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사죄

○ 실제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으나, 손괴죄가 폭력범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손괴죄에 수반하여 생명·신체가 침해되거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의견 일치**

(마)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손상 등 죄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제92조 제1항	국가지정문화재 손상등 (절취 제외)	↑3년
제92조 제2항	i. 제1항 외 지정문화재 손상등 (절취 제외) ii. 일반동산문화재 손상등 (절취 제외)	↑2년
제92조 제4항	제1, 2항 이전 손상 행위 미처벌 은닉	↑3년, ↑2년
제93조 제1항	집단·흉기등 손상등	각 ↑3년~45년↓, ↑2년~45년↓
제93조 제2항 전단	집단·흉기등 손상등치상	↑5년, 무기
제93조 제2항 후단	집단·흉기등 손상등치사	↑5년, 무기, 사형
제94조	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등 파괴	형법 제367조 등 각 해당 조에 정한 형의 1/2 가중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정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의견 일치**

-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손상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들이 다수 존재하고 실제로 적지 않은 사건들이 발생
- 절도죄, 방화죄의 경우에도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절도, 문화재 방화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 문화재특수손상, 특수손상치사상의 경우도 양형기준 설정 대상인 특수

손괴,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사상과 행위태양이 유사하므로 통일적인 기준 마련 필요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특가법상의 산림입목·가로수 손상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제74조 제1항	v. 산림 입목 손상 vi. 가로수 손상	5년↓, 1,500만↓
제74조 제3항	상습 산림 입목 손상, 상습 가로수 손상	10년↓

■ 특가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조성법 제73조 제1항, 제2항 및 **74조**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 /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 or 산림 훼손면적이 5만㎡ 이상	무기, 5년↑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조성법 제73조 제1항, 제2항 및 **74조**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 /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or 산림 훼손면적이 5천㎡ 이상 5만㎡ 미만	3년↑

○ 실무례가 없고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설정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의견 일치**

- 산림자원조성법 제74조 제1항 제5호, 제6호(산림입목·가로수 손상)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사건이 간혹 있을 뿐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건은 드묾
- 또 산림자원조성법에 대해 특가법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산림자원조성법 제74조 제1항 제5호, 제6호(산림입목·가로수 손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를 한 경우(동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것임
- 그런데 무허가 입목벌채를 처벌하는 주된 취지는 행정적으로 산림자원의 보호와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형적 의미에서의 손

괴죄와는 보호법익과 성격을 달리하므로, 위 범죄를 손괴죄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음

(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손괴 구성요건과 관련된 지정산림 문화자산 손상, 숲길 훼손 등에 관한 실무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양형기준 설정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의견 일치**

(2) 유형분류

(가) 대유형분류

○ **일반적 기준 / 상습·누범·특수손괴 /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3개 대유형으로 분류하기로 **의견 일치**

○ 일반적 기준

- 특별재산 여부를 별도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이를 일반적 기준에 모두 포함시켜 대유형 분류를 보다 단순화함

○ 상습·누범·특수손괴

- 형법 및 각종 특별법에 규정된 가중적 구성요건을 별도의 대유형에 포섭

○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체포·감금범죄처럼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대유형을 나눌 경우 대유형이 지나치게 많아지므로 이를 하나로 통합

(나) 소유형분류 : 아래와 같이 분류하기로 의견 일치

01 일반적 기준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등	3년↓			
2	공익건조물파괴	10년↓			
3	지정문화재손상 등	2년↑			
4	국가지정문화재손상	3년↑			

○ 폭처법상 공동손괴(4년6월↓)

- 1유형의 가중인자로 반영

○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등 파괴(15년↓)

- 2유형의 가중인자로 반영

○ 중손괴(↑1년, 10년↓) : 아래 **3안 채택**

- **1안** : 별도의 소유형으로 설정

■ 공익건조물파괴보다 법정형 높으며, 재물손괴, 공익건조물파괴 범죄의 결과적가중범인 점 고려

- **2안** : 공익건조물파괴(2유형)와 동일 소유형에 포섭

■ 공익건조물파괴와 상한이 동일한 반면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에 불과 ⇨ 별도의 소유형으로 설정하더라도 사실상 공익건조물파괴 유형과 다른 형량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점 고려

- **3안** : 1, 2유형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재물손괴(법정형 3년 이하)로 인한 중손괴의 경우 법정형은 높지만 사실상 그 죄질과 불법의 정도가 공익건조물파괴 범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임 ⇨ 형량의 적정한 균형 유지를 위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1, 2유형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02 상습·누범·특수 손괴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누범·특수손괴등**	1년↑			
2	**상습특수·누범특수손괴**	2년↑			
3	**문화재특수손상**	↑2년~45년↓/ ↑3년~45년↓			

○ 특수공익건조물파괴((1년↑)

- 1유형에 포섭

○ 문화재특수손상

-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한 범행(3년 이상 45년 이하 징역), 그 외 지정문화재에 관한 범행(2년 이상 45년 이하 징역)을 포괄하여 하나의 소유형으로 형량범위 설정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1년↑			
2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사**	3년↑			
3	**문화재특수손상치상**	무기, 5년↑			
4	**문화재특수손상치사**	사형, 무기, 5년↑			

○ 문화재특수손상치상, 문화재특수손상치사

- 두 범죄의 징역형의 법정형은 동일하나, 치사범죄 법정형에 사형을 규정하여 치상과 치사 간 결과불법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점 고려 ⇨ 소유형 구분해 형량범위 차등화

5. 게임물 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가. 양형기준 설정범위 및 유형분류

○ 사행행위를 규율하는 형법과 각종 특별법 상의 구성요건들에 관해 양형기준 설정범위 포함 여부, 합리적 유형분류 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논의

○ 특히 게임물 범죄는 처벌규정이 형법과 여러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고 각 처벌규정의 구성요건과 보호법익도 다소 상이하므로, 양형기준 설정 범위와 범죄 유형 분류를 서로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음

○ 실무례가 없는 형법상 '복표발매 및 복표발매 중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상 '무허가사행기구 제조·판매', 범죄 발생

에 지역적 한계가 있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위반'의 양형기준 설정범위 포함 여부를 비롯하여, 양형기준 설정범위 및 유형분류 전반에 관해 제81차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함

II. 제81차 전체회의

1. 일시・장소

○ 일시 : 2014. 5. 26.(월) 15:00 ~ 18:4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14명)

○ 수석전문위원, 강동혁, 강수진, 김현아, 김혜정, 노수환, 범현, 오기찬, 이수정, 이진국, 최준혁, 최진녕, 황병헌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권리행사방해, 신용・업무・경매, 게임물 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4.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가. 양형기준 설정범위

(1) 강요범죄

(가) 형법상 강요죄, 폭처법위반죄(공동강요, 상습강요, 누범강요, 특수강요, 상습・특수강요, 누범・특수강요)

○ 강요범죄의 기본 구성요건 및 가중요건으로 발생빈도도 비교적 높으므로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의견 일치**

(나) 형법상 강요미수죄

○ 지금까지 살인범죄 이외에 미수범의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설정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의견 일치**

(다) 인질강요, 인질상해·치상, 인질살해, 인질치사

○ 이미 살인범죄군,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군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 설정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의견 일치**

(라) 중강요

○ 실무례는 거의 없지만, 강요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며, 강요죄의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의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고려,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의견 일치**

(마) 피해자 등에 대한 합의강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제60조)

○ 국민적 관심이 높고, 형법상 강요의 특별구성요건으로 그 보호법익, 범죄의 성격, 행위태양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의견 일치**

(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제6조, 제7조, 제2조 제4호 자목[2)]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에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중 해당 관련 범죄에 관하여

---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자.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양형기준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의견 일치**

(사) 강요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기타 범죄(직권남용[3],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강요[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5], 경비업법 제29조[6], 항공법 제166조[7])

○ 보호법익, 가벌성, 범죄의 성격 및 행위태양 등 여러 측면에서 상이한 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설정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의견 일치**

(2) 권리행사방해, 점유강취, 강제집행면탈죄

(가) 형법상 권리행사방해,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강제집행면탈

○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

---

3)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5) 특가법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경비업법 제29조(형의 가중처벌)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중에 제14조제8항의 규정 및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 제350조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7) 항공법 제166조(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항공기에 있는 사람에게 그의 의무가 아닌 일을 시키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기장 또는 조종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폭력을 행사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기장 또는 조종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들로 발생빈도도 높으므로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의견 일치**

(나) 중권리행사방해

○ 중강요와 같은 이유로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의견 일치**

(다)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8], 공무상보관물무효[9]

○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의 장에 규정되어 있는 위 범죄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형기준 설정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의견 일치**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국가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권리행사방해, 강제집행면탈과 구별되고, 실무례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

- 공무상보관물무효

■ 권리행사방해죄와 범죄의 성격, 행위태양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으나, 형법이 개인의 재산권적 측면보다는 공무방해 측면에 중점을 두어 공무집행방해의 장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구성요건의 유사성을 이유로 다른 장에 규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을 함께 설정할 경우 양형기준 적용상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

나. 유형분류

(1) 대유형 분류

○ **'강요'와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2개의 대유형으로 분류하기로 **의견 일치**

- 보호법익에 따라 자유에 관한 죄인 강요와 재산권에 관한 죄인 권리행사방해·점유강취·강제집행면탈로 구분, 2개의 대유형으로 분류

8)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강요' 유형의 소유형 분류 : 아래와 같이 분류하기로 의견일치[10]

유형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1	일반강요	강요	형법 §324	5년↓
		공동 강요	폭처법 §2 ②	7년 6월↓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	아청법 §16, 아동학대법§60	7년 ↓
2	중강요	중강요	형법 §326	10년 ↓
3	상습·누범·특수 강요	상습·특수·누범 강요	폭처법 §2조 ①, §2조 ③, §3조 ①	2년 ↑
		상습특수·누범특수 강요	폭처법 §3 ③, §3 ④	3년 ↑

○ 먼저 일반강요 / 상습·누범·특수 강요 구분

- 행위태양 및 수단(집단, 흉기휴대 등의 결합 여부), 상습성 및 누범여부에 따라 법정형과 가벌성의 차이가 큼

○ 중강요

- 법정형의 차이를 고려하여 일반강요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소유형 설정

○ 폭처법상 공동강요

- 일반강요 유형의 가중인자로 반영

○ 피해자 등에 대한 합의강요

- 일반강요 유형에 포섭
- '범죄에 특히 취약한 피해자'를 특별가중인자로,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 폭처법상 상습·누범·특수강요 및 상습특수·누범특수강요를 하나의

10) 다만, 일반강요 유형에 포섭하기로 한 '공동강요',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 에 관하여 강요죄와의 법정형 차이를 반영해 이를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자는 의견도 있었음(김현아, 오기찬 위원). 이에 대하여 '공동강요'의 경우 폭력범죄 양형기준 등에도 일반가중인자로 반영되어 있으며 양형기준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의 경우도 강요죄와 법정형 차이가 크지 않아 특별가중인자 반영 방식을 통해 형량을 차등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음. 논의 결과 다수의 견해대로 일치된 것으로 정리하되, 향후 형량범위 설정 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될 경우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로 함

상습·누범·특수강요 유형으로 분류

- 실무상 상습특수·누범특수 범행으로 처벌된 사례가 극히 드물어 형량범위를 정하기 어렵고, 법정형의 차이(1년)도 그다지 크지 않음
- 다만, 상습특수 및 누범특수를 (특별)가중양형인자로 반영할 수 있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자목, 제7조, 제2조 제4호 자목

- 강요죄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3) 권리행사방해 등 유형의 중소유형 분류 : 아래와 같이 구성요건 및 법정형에 따라 분류하기로 의견일치[11)]

유형	구 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1	권리행사방해	권리행사방해	§323	5년 ↓
2	점유강취 / 준점유강취	점유강취	§325 ①	7년 ↓
		준점유강취	§325 ②	7년 ↓
		중권리행사방해	§326	10년 ↓
3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면탈	§327	3년 ↓

○ 중권리행사방해

- 점유강취·준점유강취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중강요와 달리 법정형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점유강취의 유형에 포섭하되, 법정형의 차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11) 다만, 2유형에 포섭하기로 한 '중권리행사방해'에 관하여 점유강취(준점유강취)와의 법정형 차이를 반영해 이를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자는 의견도 있었음(김현아, 오기찬 위원). 이에 대하여 '중권리행사방해'의 경우 점유강취(준점유강취)와 법정형 차이가 크지 않아 특별가중인자 반영 방식을 통해 형량을 차등화할 수 있으며, 또 중권리행사방해는 점유강취(준점유강취)에 한정한 가중적 구성요건이어서 이를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할 경우 체계 정합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음. 논의 결과 다수의 견해대로 일치된 것으로 정리하되, 향후 형량범위 설정 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될 경우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로 함

5. 신용·업무·경매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가. 양형기준 설정범위

(1) 형법

(가) 업무방해죄, 경매·입찰방해죄

○ 형법상 기본 구성요건이며 범죄 발생 빈도도 높으므로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의견 일치**

(나) 신용훼손죄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형기준 설정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의견 일치**

-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빈도가 현저히 낮고 국민 관심도 높지 않음
- 신용훼손죄를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시킨다면, 업무방해, 경매·입찰방해 범죄와는 이질적인 측면이 많아 이를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해야 하나, 별도의 양형인자 추출이 곤란
-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유사한 측면이 많음 ⇨ 향후 명예훼손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게 되면 그 범죄군에서 설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더 체계적일 수 있음

○ **범죄군 명칭변경 : "신용·업무·경매범죄" ⇨ "업무방해범죄"**

- 신용훼손죄를 양형기준 설정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대표범죄를 전면에 내세워 범죄군 명칭을 업무방해범죄로 변경하기로 **의견 일치**

(다) 컴퓨터업무방해죄

○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본질에서 일반 업무방해죄와 동일하며, 이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5. 12. 29. 형법 개정 시 신설된 처벌조항임

○ 실무례는 많지 않지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의 경우 중대하고 광범위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의견 일치**

(2) 특별법

적용법률	조항	구성요건	법정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8, 41②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	5년↓, 5,000만원↓
	§89 1호, 37②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조합원의 쟁의행위	3년↓, 3,000만원↓
	§89 1호, 38①	쟁의행위와 관계 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쟁의행위 /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 협박을 사용한 쟁의행위	
	§89 1호, 42①	폭력이나 파괴행위에 의한 쟁의행위 /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89 1호, 42조의2②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90, 44②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	2년↓, 2,000만원↓
	§90, 77	본법 76③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되었음에도 쟁의행위를 중지하지 않음 / 긴급조정의 결정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쟁의행위 재개	
	§91, 41①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1년↓, 1,000만원↓
	§91, 42②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91, 45②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쟁의행위	
	§91, 63	중재에 회부된 때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하는 쟁의행위	
건설산업기본법	§95 1~3호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 /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 /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	5년↓, 5,000만원↓

적용법률	조항	구성요건	법정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6①9호, 19①8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	3년↓, 2억원↓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형기준 설정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의견 일치**

- 노동관계법의 규정을 위반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12] ⇨ 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보다 법정형이 낮은 노동관계법 위반죄(3년 이하 징역, 2년 이하 징역, 1년 이하 징역)에 관하여 특유한 양형기준을 상정할 필요성 낮음
- 실무상 노동관계법 위반죄의 발생빈도가 낮은 편이고, 대부분 약식기소되거나 구공판되더라도 대체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향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 입찰방해죄의 특별구성요건으로 법정형이 높은 점, 사회적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의견 일치**

(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형기준 설정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의견 일치**

-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로 인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적 조치로 처벌됨
-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거의 없으며, 그나마 사업자인 법인만이 피고인으로 기소되어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
- 향후 실무례가 축적되고 공정거래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 여부에 관한 논의가 성숙된다면 공정거래법위반 범죄의 기준 중 하나로 검토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적합

12)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노동관계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해지고 그것이 동시에 위력으로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는 경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4.8. 선고 2007도6754 판결 등)에 의하면 업무방해죄와 노동관계법 위반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

나. 유형분류

(1) 대유형 분류

○ **'업무방해'와 '경매·입찰방해'**의 2개의 대유형으로 분류하기로 **의견 일치**

(2) '업무방해' 유형의 소유형 분류

(가) 소수의견(강동혁, 강수진, 오기찬, 이진국, 최진녕) : 구성요건에 따라 '위계/위력/컴퓨터'로 분류하는 방안

○ 법문의 구성요건에 따라 '허위 사실 유포[13], 기타 위계[14]에 의한 업무방해', '위력[15]에 의한 업무방해', '컴퓨터 업무방해'로 유형분류

○ 위계와 위력, 컴퓨터 업무방해는 행위태양이 명백히 차이가 나는 바, 구성요건에 따라 유형을 나누게 되면 그 기준이 명확하고 사용자 편의성이 증대됨

○ 양형인자 설정 시 행위태양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기 적절

○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행위 태양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분하여 소유형 분류 ⇨ 유사범죄 간 통일적인 기준 마련 가능

○ 실제 판결 분석결과 위계형과 위력형 사이에 유의미한 양형 편차가 발견됨

- 평균형량은 위계형이 9월, 위력형이 6.2월임
- 위계형의 경우 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 형량이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 6월부터 1년까지는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반해 위력형의 경우 징역 3월부터 1년까지 형량이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 4월과 6월에 대부분의 사건이 집중되어 있음
- 위계형의 경우 지능적,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단순하고 즉흥

13)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
14) 상대방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허위사실의 유포는 위계의 예시로 보고 있음
15)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데,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이에 포함

적인 범행이 많은 위력형에 비해 선고형량이 높은 것으로 보임

※ 분류안에 따른 분석대상 판결 분류[16)]

		형량(월)							실형	집행유예	합계	평균형량(월)
		3	4	6	8	10	12	18				
위계	수			10	7	8	7	1	2	31	33 (전체 중 22.6%)	9
	비율(%)			30.3	21.2	24.2	21.2	3	6	93.9		
위력	수	3	38	40	17	10	5		36	77	113 (전체 중 77.4%)	6.2
	비율(%)	2.6	33.6	35.3	15	8.8	4.4		31.8	68.1		
전체	수	3	38	50	24	18	12	1	38	108	146	
	비율(%)	2	26	34.2	16.4	12.3	8.2	0.6	26.1	73.9	100	

(나) 다수의견(김현아, 김혜정, 노수환, 범현, 이재권, 최준혁, 황병헌) : 별도의 소유형을 분류하지 않는 방안

○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들에 대해 행위 태양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경우 소유형간 형량범위에 차별화를 기하기 어렵고, 그 경우 유형을 구분하는 의미가 퇴색됨

○ 특히 컴퓨터업무방해죄의 경우 참고할 만한 실무례가 거의 없어 위계형, 위력형과 구분되는 형량범위를 설정하기 곤란

○ 위계, 위력, 컴퓨터 업무방해 상호간 어떤 유형의 범죄의 비난가능성이 더 높은지 일반화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위력형 중에서도 계획적, 조직적 범죄의 경우 위계형보다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적지 않음

○ 위계/위력의 경우 동일한 조문 내에서 구성요건만 달리 하는데, 그와 같은 경우 유형을 달리 정한 전례가 없음

○ 소유형을 분류하지 않고 하나의 양형인자표를 사용하더라도 위계/위력/컴퓨터에 특유한 양형인자를 설정하는 데 문제없음

(다) 기타 유형분류 제시안(찬성 견해 없음) : 일반적/집단

16) 양형자료조사 대상 사건 중 최근 선고사건 기준으로 146건 분석

적 · 조직적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업무방해를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하여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집단적·조직적 방해'로, 그 외의 경우를 '일반적 방해'로 분류

○ 다음과 같은 점에서 채택하지 않기로 의견일치

- 실제 사례에서는 일반적 방해인지 집단적 · 조직적인 방해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업무방해 범죄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집단들 사이에서 분쟁해결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다수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사기범죄 등과는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반드시 가해/피해, 선/악의 기준으로 나누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또 업무방해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것을 요하지 않음 ⇨ 집단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방해라고 하여 불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반드시 높다고 할 수 없음

(3) 경매·입찰방해 유형의 소유형 분류

○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로 **의견일치**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경매·입찰방해**			
2	**건설 입찰방해**			

- 형법상 경매·입찰방해(2년 이하 징역)와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방해(5년 이하 징역)의 법정형 차이를 유형분류에서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음
- 건설공사 입찰방해를 가중처벌하고자 하는 특별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음

6. 게임물 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가. 양형기준 설정범위

○ 사례가 부족하거나 지역적 제한이 있는 범죄라도 **본질이 같거나 유사한 범죄들은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일치**

○ 아래 형법 및 특별법 조항 중 음영 표시가 있는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함

■ 형법[17)]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247	도박장소 등 개설	5년↓, 3000만↓
§248 ①	복표발매	5년↓, 3000만↓
§248 ②	복표발매 중개	3년↓, 2000만↓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30 ① 1호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	5년↓, 5000만↓
§30 ① 2호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제조 · 수입	5년↓, 5000만↓
§30 ② 1호	무허가 사행행위영업	3년↓, 2000만↓
§30 ② 2호	사행행위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년↓, 2000만↓
§30 ② 3호	무허가 사행기구 제조 · 판매업	3년↓, 2000만↓
§30 ③ 1호 내지 14호	규제사항 등 위반	1년↓, 1000만↓

17) 2013. 4. 5. 형법 개정으로 '도박개장'이 '도박장소 등 개설'로 변경되었고, 도박장소 등 개설, 복표발매, 복표발매 중개 등 범행의 법정형이 상향 조정되었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44 ① 1호	도박 또는 사행행위 주재, 방치	5년↓, 5000만↓
§44 ① 1의2호	경품 등 제공으로 사행성 조장	5년↓, 5000만↓
§44 ① 2호	미등급 게임물 유통 · 이용제공 · 진열보관/ 사행성 게임물 유통 · 이용제공 · 진열보관/ 환전업 · 환전알선업 · 재매입업	5년↓, 5000만↓
§44 ① 3호	폐쇄 등 조치 불응	5년↓, 5000만↓
§45 2호	무허가·무등록 게임제공업 등	2년↓, 2000만↓
§45 4호	변경 게임물 유통 · 이용제공 · 전시보관	2년↓, 2000만↓
§45 중 2, 4호 제외 부분	규제사항 등 위반	2년↓, 2000만↓
§46	규제사항 등 위반	1년↓, 1000만↓

■ 관광진흥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81 1호	무허가 카지노업	5년↓, 5000만↓
§81 2호	카지노사업자 준수사항 등 위반	3년↓, 2000만↓
§83	상동	2년↓, 2000만↓

■ 한국마사회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50 1호/48조 ①	경마 시행	5년↓, 5000만↓
§50 1호/48조 ② 1호	유사행위를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지급	상동
§50 1호/48조 ② 2호	경마 정보 등의 무단 복제 등	상동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50 1호/48조 ③ 1호	마권 구매 대행 · 알선 또는 마권 양도	상동
§50 1호/48조 ③ 2호	외국 경주 이용 승마투표행위 등	상동
§50 2호	도박 또는 방조	상동
§50 3호, 51, 53 내지 55	경마 관련자 등 부정행위	생략

■ 경륜·경정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26	경주 방해 등	5년↓, 1500만↓
§27 ① 1호	승자투표권의 발매 등 영리행위	3년↓, 1000만↓
§27 ① 2호	도박 또는 방조	상동
§27 ① 3호, 29, 30, 31	경주 관련자 부정행위	생략
§34	투표권 구매제한 위반	1년↓, 300만↓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24	경기 방해 등	5년↓, 3000만↓
§25, §26 ①3호, §27, §28	경기 관련자 부정행위	생략
§26 ① 1호	우권 등 발매 / 소싸움경기 시행	3년↓, 2000만↓
§26 ① 2호	도박 또는 방조	상동
§28	투표권 구매제한 등 위반	1년↓, 500만↓

■ 국민체육진흥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47 1호[18]	유사행위를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지급	7년↓, 7000만↓
§48 1호	도박	5년↓, 5000만↓
§48 2호	유사시스템 설계 · 제작 · 유통 또는 이용 제공	상동
§48조 6호	경기 방해	상동
§49 1호	유사행위를 위한 홍보 등 행위	3년↓, 3000만↓
§49 2호	투표권 판매제한 등 위반	상동
§47 2호, §48 3호, 4호, 5호	운동경기 관련자 부정행위	생략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34 ① 1호	복권 발행 행위	3년↓, 2000만↓
§34 ① 2호	복권 정보 부당 제공 등	상동
§34 ① 3호	복권 관련자 부정 행위	상동
§34 ②	판매제한 등 위반	1년↓, 500만↓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10 ②	풍속영업자가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하게 함	3년↓, 2000만↓

18) 2014. 1. 28.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같은 처벌조항이 제47조 제2호로 규정됨(2014. 7. 29. 시행)

■ 식품위생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97 6호	식품접객업자의 도박 또는 사행행위 방지의무 위반	3년↓, 3000만↓

나. 유형분류

(1) 대유형 분류

○ 게임물 범죄의 경우 설정대상 법률 및 구성요건이 매우 많은 점, 사용자편의 등을 고려해 2개의 대유형 분류안[19]은 채택하지 않음

○ 행위유형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5개 대유형으로 분류**하기로 **의견일치**

※ 분류방법에 따른 해당 법조의 배치

■ 제1유형(도박장소 개설, 불법 사행행위 등)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형법 247조	영리 목적 도박장소 등 개설	5년↓, 3000만↓
형법 248조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 발매	5년↓, 3000만↓
사행법 30조1항1호	투전기, 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5년↓, 5000만↓
게임법 44조1항1호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도박·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	5년↓, 5000만↓
게임법 44조1항1의2호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경품제공 등 사행성 조장	5년↓, 5000만↓
게임법 44조1항2호, 32조1항4호	사행성 게임물 이용제공, 이를 위한 진열·보관	5년↓, 5000만↓
관광진흥법 81조 1호	무허가 카지노업	5년↓, 5000만↓
복권법 34조1항1호	복권 발행	3년↓, 2000만↓

19) 사행행위의 주재(도박장소 등 개설, 불법 사행행위영업, 불법 게입장영업, 유사행위 등) / 사행행위 도구 등 제조·유통(사행성유기기구・불법 게임물 제조·유통 등)

■ 제2유형(사설경마, 유사행위 등)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마사회법 50조1호, 48조1항	경마시행	5년↓, 5000만↓
마사회법 50조1호, 48조2항1호	승마투표 유사행위로 적중자에게 재물 등 지급	5년↓, 5000만↓
마사회법 50조1호, 48조3항2호	외국 경주 관련 전자적 방법 승마투표행위 등	5년↓, 5000만↓
경륜경정법 27조1항1호	승자투표권 발매, 적중자에게 금전 지급 등 영리행위	3년↓, 1000만↓
전통소싸움법 26조1항1호	우권 등 발매, 적중자에게 금전 지급하는 소싸움 경기 시행	3년↓, 2000만↓
국민체육진흥법 47조1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등 제공	7년↓, 7000만↓
국민체육진흥법 48조2호	정보통신망 이용 투표권발행시스템 공중 이용제공[20]	5년↓, 5000만↓

■ 제3유형(불법게임물 유통 등)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사행법 30조1항2호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 판매, 판매 목적 제조·수입	5년↓, 5000만↓
게임법 44조1항2호, 32조1항1호	미등급 게임물 유통, 이를 위한 진열·보관	5년↓, 5000만↓
게임법 44조1항2호, 32조1항4호	사행성 게임물 유통, 이를 위한 진열·보관	5년↓, 5000만↓
게임법 45조4호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유통 및 전시·보관	2년↓, 2000만↓
국민체육진흥법 48조2호	정보통신망 이용 투표권발행시스템 설계·제작·유통	5년↓, 5000만↓

▪ 제4유형(무허가·무등록 영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사행법 30조2항1호	무허가 사행행위영업	3년↓, 2000만↓
사행법 30조2항3호	무허가 사행기구제조·판매업	3년↓, 2000만↓
게임법 45조2호	무허가·무등록 게임제작·배급·제공업	2년↓, 2000만↓

20) 실무상 유사시스템의 '이용제공' 처벌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 제5유형(게임물 이용제공 관련 금지행위)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게임법 44조1항2호, 32조1항1호	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 이를 위한 진열·보관	5년↓, 5000만↓
게임법 44조1항2호, 32조1항7호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5년↓, 5000만↓
게임법 45조4호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전시·보관	2년↓, 2000만↓

(2) 중소유형 분류

○ **구성요건 또는 법정형에 따라 분류**하기로 **의견일치**

- 법정형이 다른 경우 비난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간명하면서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식
- 게임물 범죄의 경우 불법의 정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영업규모라 할 수 있으나, 그에 따라 중소유형을 분류할 경우 영업규모를 나누는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고, 범행축소·은폐를 특성으로 하는 게임물 범죄의 특성상 실제와 다르게 중소규모 유형으로 가볍게 처벌받는 사건이 많아질 우려

■ 영업규모는 양형인자로 반영

○ 다만, 아래의 구체적 소유형 분류는 추후 논의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 있음

(3) 유형 분류안

(가) 제1유형(도박장소 개설, 불법 사행행위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복권·복표 발매			
2	도박장소 등 개설			
3	사행성 게임장 영업/무허가 카지노업			

(나) 제2유형(사설경마, 유사행위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사설경마 / 사설경륜·경정			
2	사설스포츠토토 등			

(다) 제3유형(불법게임물 유통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2	사행성유기기구 / 미등급게임물·사행성게임물			
3	유사 스포츠토토 시스템			

(라) 제4유형(무허가·무등록 영업)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게임제작업 등			
2	무허가 사행행위영업 / 무허가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마) 제5유형(게임물 이용제공 관련 금지행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2	미등급 게임물 / 환전·환전알선·재매입			